

레미콘·아스콘 공장설치 반대 진정서

1. 진정내용

- 진 정 인 : 남하면 무릉리 정수진외 141인
- 위 치 : 구 유남제사 공장부지
- 접수일시 : 2003. 3. 14.
- 진정요지 :
 - 구 유남제사 공장부지에 레미콘·아스콘 공장 설치를 반대
 - 공장부지에서 200m 지점에 상수도 취수구의 수질오염 및 고갈 우려
 - 소음, 분진, 매연 등 공해 발생 대형트럭 운행으로 사고 우려
 - 농지에 시멘트가루가 날려 농사에 지장을 초래
 - 남하초등학교와 접하여 자녀교육에 지장
 -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가축사육에 지장
 - 타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, 공해의 심각성을 확인

2. 집행부의 추진경과

- 진정서 접수 : 3. 12
- 민원인 회신 : 3. 14 (공장설립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법을 검토하여 처리)
- 공장설립신청서 접수 : 3. 15
- 신청서 보완 요구 : 3. 21(부지조성계획 설계도서 첨부, 위해방지와 환경오염 등 구체적인 계획, 진출입로 설치계획 등)
- 보완계획서 접수 : 3. 31 ○ 민원서류 처리기한 : 4. 12

- 부지면적 : 8,761m²(2,561평) ○ 건물 : 907m²(274평)
- 신 청 자 : 정순우
- 환 경 : 대기·수질 각 5종, 소음·진동·분진 - 신고 대상

3. 검토결과

- 지역주민에 반대한다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.
- 행정청이 공장설립 허가 처분을 했더라도 지역 주민이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스스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는 사례는 있음.
- 그리고, 지역주민이 반대함으로 허가할 수 없다는 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은 행정쟁송(행정심판, 소송제기)을 제기할 소지가 많음.
- 따라서, 본 진정서는 공장설립 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된 진정이나 현재 공장 설립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업계획과 공해배출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행정처분토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하고자 함.